

눈높이사랑봉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눈높이사랑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봉사단은 (주)대교 조직원이 국내·외 어린이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사무처 및 지역봉사회 의 소재지)

1. 중앙사무처는 주무부서(現 사회공헌실)의 위치를 따른다.
2. (주)대교의 각 지역본부에 지역봉사회(이하 “지회”)를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국내·외 어린이, 소외계층에 대한 제반 공헌활동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조(회원자격)

(주)대교에 재직중인 임원 및 직원, 사업자

제6조(회원가입)

㈜대교 조직원을 대상으로 후원인 모집 캠페인을 실시하여 모집하며, 매월 각 지역본부 별로 신입사원 입사(사업자 계약)시 모집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1.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간 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별도의 탈퇴의사가 없는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된다.
2. 회원은 지역봉사회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3. 회원은 퇴사하거나 ㈜대교와 사업자 계약 해지시 자동 탈퇴 된다.

제3장 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

제8조(후원금)

1. 봉사단은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2. 정기 후원금: 회원 급여 및 수수료에서 매월 1구좌 당 ₩1,000씩 자동공제 한다.
3. 특별 후원금: 봉사단은 특별행사 및 전사적 모금활동으로 정기 후원금 외에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제9조(후원금사용)

1. 지회 후원금은 각 지회 별로 자체 관리하고 사용한다.
2. 후원금은 봉사단 사업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봉사단 운영에 따른 회의비 및 식비 등은 지회장의 책임하에 1인/1일/1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3. Matching Grant 자금(20%)은 봉사단 활동을 대상으로 사용하며 특별 사항 발생으로 사용시 봉사단장의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각 지회의 단위 조직은 지회운영위원회에 후원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의결 요건 : 재적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

5. 각 지회의 단위 조직은 후원금 사용 내역 및 보고서를 지회장의 서면 또는 온라인 결재를 득한 후 매월 10일까지 중앙사무처로 응신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구성

제10조(봉사단 조직)

1. 봉사단은 다수의 지회로 구성한다.
2. 봉사단과 지회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3. 중앙사무처는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를 계획 및 주관한다.
4. 또한, 지회를 관리 감독하고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중앙운영위원회 - 봉사단장 1명, 사무처장1명, 지역별 지회장
2. 지회운영위원회 - 지역본부별 지회장 1명, 지회별 간사 1명, 지회별 운영위원 약 6~8명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봉사단장: 눈높이사업부문 대표이사로 하며 임기는 대표이사 임기와 같다.
2. 중앙사무처장: 주무부서의 장의 임기와 같다.
3. 지회장: 간사 및 조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본부의 장이나 그 사람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4. 간사 및 지회운영위원: 자발적 지원 및 지회장 추천을 받은 자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임기완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봉사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봉사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중앙사무처장은 전국 지역봉사회를 관리 감독하며 봉사단장을 보좌 한다.
3. 지회장은 지역 봉사회를 대표하고 지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간사는 봉사단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내용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5. 운영위원은 각 지회 단위조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의결하며 지회의 제반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개최)

1. 중앙운영위원회 - 정기모임 : 정관개정, 후원금, 예산사용, 활성화 방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1년에 2회 진행한다. (상반기, 하반기)

- 임시모임 : 필요 시 봉사단장 및 중앙사무처에서 임시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 통신 및 e-mail, 서면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지회운영위원회 - 정기모임 : 1월 정기회의 시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을 하며, 매월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정기회의시 월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모임 : 중앙사무처의 지시사항 및 수시 발생하는 안건에 관해 지회장은 임시 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이 어려울 경우 통신 및 e-mail을 통해 회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제5장 정관의 변경

제15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회장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설립 및 해산

제16조(설립)

봉사단은 (주)대교 각 지역본부에 기초를 두되 지회는 인원, 조직, 특성에 따라 분리시키고 합할 수 있으며, 이는 봉사단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관련 예산처리는 조직 변경 월 잔액 기준, 후원금 구좌수 대비 1/N로 한다.

제17조(해산 및 합병)

봉사단을 해산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는 지회장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잔여재산의 처리)

봉사단 해산 후 잔여재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주)대교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다. (의결 요건 : 재적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

<부칙>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회장과 중앙사무처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본 정관은 2011.08.22일로부터 시행한다.